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639 발의연월일: 2025. 1. 20.

발 의 자:임호선·박정현·정준호

김동아 · 문대림 · 복기왕

이연희 · 안태준 · 고민정

권칠승 · 임미애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피해자의 성명과 결합된 아동학대범죄 관련 사건명 또는 법률명이 통용되고 있어,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해당 성명에 대한 편견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임.

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임시조치는 검사를 경유하여 법원에 청구하 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임시조치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위험예방활 동이므로 신속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경찰에서 검사를 경유하지 않 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. 또한, 아동학대 범죄 발생 이전이라도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'발생할 우려'가 있다면 임시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. 아울러, 긴급임시조치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과태료 밖에 없어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률명 또는 아동학대범죄 사건명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, 경찰에서수사 종결하는 사안이라도 아동학대 가해자 성행교정을 위해 직접 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하도록 하여 아동보호를 강화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임시조치의 청구 주체에 '사법경찰관'과 '보호관찰관'을 추가하고,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제3항, 제14조제1항, 제14조제2항, 제14조제3 항, 제15조제1항, 제15조제2항, 제15조제3항, 제19조제7항).
- 나. 긴급임시조치의 요건으로 아동학대범죄의 '재발'을 '발생'으로 수정하고, 긴급임시조치 사항에 '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'를 할 수 있도록 함(제13조제1항).
- 다. 임시조치 접근금지는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해 100미터이내 접근 금지를 하도록 함(안 제19조제1항제2호).
- 라.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 중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함(안 제24조).

- 마.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불송치하는 사건 중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27조제1항, 제28조제1항, 제28조제2항, 제28조제3항, 제41조).
- 바.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아동학 대범죄 관련 법률명 또는 아동학대범죄 사건명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신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,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부과하고자 함(안 제27조제1항, 제28조제1항, 제28조제2항, 제28조제3항, 제41조 등).
- 사.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(안 제5 9조제3항, 제63조제1항제4호).

법률 제 호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4항 중 "검사가"를 "사법경찰관이"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"재발될"을 "발생할"로, "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" 를 "제19조제1항제1호·제2호·제3호 및 제7호"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"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"을 "검사,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은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할"로, "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"을 "법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청구 또는 그 신청을"을 "청구를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사법경찰관"을 "검사 또는 사법경찰관"으로, "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 및"을 "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"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"검사에게"를 "법원에"로, "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"을 "임시조치를 청구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"을 "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"를 "사법경찰관은"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제2호 중 "가정구성원의 주거,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 서"를 "가정구성원에 대한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"검사"를 "검 사, 사법경찰관"으로 한다.

제24조 전단 중 "사건을"을 "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을"로 하고,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.

제27조제1항 중 "검사는"을 "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"으로 한다.

제28조의 제목 "(검사의 송치)"를 "(아동보호사건의 송치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"검사는"을 각각 "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3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률명 또는 아동학대범죄 사건명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.

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검사"를 "검사, 사법경찰관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28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 에 대응하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송치

제5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(제19조제1항

제7호에 따른 유치장에의 유치는 제외한다)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.

제6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.

제6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문 등 출판물에 법률명 또는 사건명을 신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35조제4항 및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가 결합된 사건명 또는 법률명이 출판물에 실리거나 방송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개 혅 행 정 아 제12조(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 제12조(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 조치) ① ~ ③ (생 략) 조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찰관이 -----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다. ⑤ ~ ⑧ (생 략) ⑤ ~ ⑧ (현행과 같음) 제13조(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 제13조(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 급임시조치) ① 사법경찰관은 급임시조치) ① -----제1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 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 발될 우려가 있고, 긴급을 요하 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등, 그 법정대리인(아동학대행위자 를 제외한다. 이하 같다), 변호 사(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 한다.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 하고는 이하 같다), 시 · 도지사, 시장・군수・구청장 또는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

라 <u>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</u>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 략)

- 제14조(임시조치의 청구) ① 검사 전 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 에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.
 - ② 피해아동등, 그 법정대리인, 변호사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·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 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의 <u>청구 또는 그 신청을</u> 요청하 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 및 임시조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5조(응급조치 · 긴급임시조치 저

<u>제19조제1항제1호·제2호·</u>
제3호 및 제7호
,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∥14조(임시조치의 청구) ① <u>검사,</u>
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은
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할
법원
②
<u>청구를</u>
③
검사 또는 사법경찰관
청구하지 아니하는 경
<u> 우에는</u>
ll15조(응급조치·긴급임시조치

후 임시조치의 청구) ① 사법경 찰관이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 조치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시·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 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 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<u>검사</u> 에게 제19조에 따른 <u>임시조치의</u> <u>청구를 신청</u>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응 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 (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응급 조치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) 이내에, 긴급 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 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2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응 급조치결과보고서 및 제13조제2 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임시조치 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

후 임시조치의 청구) ①
법원
<u>에</u> 임시조치를
<u>청구</u>
②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
,
③ 사법경찰관은

<u>아니하거나</u>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 시 그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 야 한다.

제19조(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 지시조치)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 죄의 원활한 조사·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(이하 "임시조치"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- 1. (생략)
- 2. 피해아동등 또는 <u>가정구성원</u>
 의 주거, 학교 또는 보호시설
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
- 3. ~ 7. (생략)
- ② ~ ⑥ (생 략)
- ⑦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 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<u>검사</u>, 피 해아동등, 그 법정대리인, 변호 사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 수·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 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

	_
	_
	_
	. 1
세19조(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역	김
시조치) ①	-
	_
	· —
	_
	· —
	_
	· —
1. (현행과 같음)	
2 <u>가정구성</u>	<u>원</u>
<u>에 대한</u>	_
	_
_	
3. ~ 7. (현행과 같음)	
② ~ ⑥ (현행과 같음)	
⑦	_
검사, 기	<u> </u>
법경찰관,	_
	_
	_
	_

지하여야 한다.

⑧ ~ ⑨ (생 략)

- 제24조(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)
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
 신속히 수사하여 <u>사건을</u> 검사에
 게 송치하여야 한다. <u>이 경우 사</u>
 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
 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
 한 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- 제27조(아동보호사건의 처리)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제26 조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 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- 제28조(검사의 송치) ① 검사는 제 27조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할 법원 (이하 "관할 법원"이라 한다)에 송치하여야 한다.
 - ② <u>검사는</u> 아동학대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(競合)하는 경

·.
⑧ ~ ⑨ (현행과 같음)
제24조(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) -
<u>범죄의 혐의가</u>
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을
<후단 삭
<u>제></u>
제27조(아동보호사건의 처리) ①
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
.
② (현행과 같음)
제28조(<u>아동보호사건의 송치</u>) ①
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
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

우에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 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35조(비밀엄수 등의 의무) ①
~ ③ (생 략)
<<u>신 설></u>

제41조(보호처분의 취소)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 자가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, 피해아동, 그 법정대 리인, 변호사, 시·도지사, 시장 ·군수·구청장, 보호관찰관이 나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

<u>.</u>
③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
아동보호사건으로 사건을 관할
법원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형사
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의 규정
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제35조(비밀엄수 등의 의무) ①
~ ③ (현행과 같음)
④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
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
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률명 또
는 아동학대범죄 사건명을 신
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
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.
제41조(보호처분의 취소)
<u>검사, 사법경찰관</u> ,

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 리하여야 한다.

1. • 2. (생략)

<신 설>

제59조(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) ①·② (생 략) <신 설>

③ (생 략)

- 제63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하다.
 - 1. ~ 3의2. (생 략)
 - 4.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
 <삭 제>

 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
 행하지 아니한 사람

- 1. · 2. (현행과 같음)
- 3. 제28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관할경찰관 서의 장에게 송치

제59조(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-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 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(제19조 제1항제7호에 따른 유치장에의 유치는 제외한다)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.
-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제63조(과태료) ① -----

--.

1. ~ 3의2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<u>5</u> . · <u>6</u> . (생 략)	<u>4</u> .· <u>5</u> . (현행 제5호 및 제6호와
	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
	문 등 출판물에 법률명 또는
	사건명을 싣거나 방송매체를
	통하여 방송한 사람에게는 300
	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
	<u>다.</u>
② (생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